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방 송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에 합목적성과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안 제63조의3 제1항 및 [별표 5] 개정)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관련매출액’과 ‘관련서비스’의 정의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별표에 규정

나.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 및 부과기준율 등 상향 규정 (안 [별표 5] 개정)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방송법 고시에서 규정한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와 협의 예정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3의 제목 “(금지행위 관련매출액 등)”을 “(금지행위 매출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라 한다)”를 “서비스”로,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금액”으로 한다.

별표 5 III 제1호나목1)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 다) 중 “관련서비스”를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 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관련서비스”로 하며, 같은 1) 라)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준금액은 방송사업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 초과 1.8%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6% 초과 1.2%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6% 이하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관련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방송 및 방송사업의 분류,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매출액은 법 제85조의2제4항 및 제9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기준 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억원 이하

마) 나)와 라)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방송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 미친 영향

(2) 이용자의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를 한 방송사업자등이 이용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정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의3(금지행위 관련매출액 등)		제63조의3(금지행위 매출액 등)		
① 법 제85조의2제3항 본문에서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		
이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		-----		
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		-----		
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		
한다)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		-----		
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		-----		
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		
한 경우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		-----		
된 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라		--- 서비스-----		
한다)의 매출액으로서 다음 각		-----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		-----		
을 말한다.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별표 5] 과징금의 부과기준(제70조		
관련)		관련)		
I. ~ II. (생략)		I. ~ II. (현행과 같음)		
III.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과		III. 법 제85조의2제3항에 따른 과		

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가. (생략)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관련매출액에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은 법 제109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관련매출액을 산정할 때 관련서비스의 범위는 법 제2조의 방송 및 방송사업의

징금의 부과기준

1.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가. (현행과 같음)

나. 과징금 산정단계에 따른 산정방식 및 고려사유

1) 기준금액 산정

가) 기준금액은 방송사업자등이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

나) ----- 위반행위의 내용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2% 초과 1.8%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0.6% 초과 1.2%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6% 이하

다) -----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

분류,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 서비스 제공방식,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매출액은 법 제85조의2 제4항 및 제9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재산상황이나 그 밖에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관련매출액이 없거나 관련 매출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신 설 >

간으로 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의 취득 및 피해의 종료 또는 지속여부, 위반행위의 연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관련서비스-----

-----.

라) -----

----- 중대성의 정도를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억원 이하

마) 나)와 라)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 3) (생략) 2. 세부기준 (생략)	<u>(1) 방송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 등 시장에 미친 영향</u> <u>(2) 이용자의 피해 규모</u> <u>(3) 위반행위를 한 방송사업 자등이 이용자의 피해 회 복에 노력한 정도</u> 2) ~ 3) (현행과 같음) 2. 세부기준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연락처	(02) 2138 - 1524